

#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5,357,389	9,760,722
일반회계	297,983,611	8,939,508
특별회계	27,373,778	821,213
기타특별회계	27,373,778	821,21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47,145	40,414
수질개선특별회계	13,130,201	393,9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9,257	18,578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920,000	117,60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7,765	8,63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30,860	75,926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52,200	19,56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24,100	12,72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462,250	133,868

제 2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46,18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